

국민이 주인되는 희망강북!



구의회사무국



수신자 내부결재

(경유)

제 목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(제195회 제2차 정례회)

『지방자치법』 제66조의2와 관련하여 『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의 안건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강북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.

1. 조례현황

연번	발의의원	안건명	비고
1	구본승	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

2. 입법예고기간 : 2015. 11. 26.(목) ~ 12. 1.(화)(-6일간-)

3. 입법예고방법 : 강북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재

붙임 조례안 및 입법 예고문 각 1부. 끝.

주무관

이동민

의사팀장

노희범

구의회사무국장

11/26
代 김병윤

협조자

전문위원

조병훈

시행 구의회사무국-100852 () 접수 ()

우 01036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89(수유동) / <http://council.gangbuk.go.kr>

전화 02-901-4521 / 전송 02-901-4519 / 대시민공개